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163
----------	------

발의연월일 : 2025. 3. 20.

발의자 : 최은석 · 박충권 · 이인선

김승수 · 김성원 · 이종욱

정동만 · 김상훈 · 서일준

박덕흠 · 박정하 · 조승환

권성동 · 김정재 · 임이자

유용원 · 조지연 · 김장겸

박수영 · 윤재옥 · 정희용

조경태 · 구자근 · 김태호

최수진 · 윤영석 · 박정훈

강대식 · 정성국 · 서지영

의원(3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최초 3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를 감면하고, 그다음 2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평균 유지기간은 4.15년으로 비교적 짧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일반형 표준사업장은 자회사 표준사업장에 비해 경영상 어려움이 커 사업장 활성화를 위한 물품의 판로 개척과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현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이는 민간 부문의 구매 확대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공공기관에 한정된 인센티브만으로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시장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부담 완화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활성화에 대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기간 이후에도 추가적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내국인이 일반형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을 구매할 경우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들의 구매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6 및 제85조의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의6제2항 중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감면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100분의 100
2. 제1호의 기간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100분의 50

3. 제2호의 기간 다음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100분의 30

4. 제3호의 기간 이후에 해당하는 과세연도: 100분의 20

제2장 제8절에 제85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의11(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같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제외한다)의 생산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그 비용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전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비용을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5조의6(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생략) 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u>해당 사업</u>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u>과세연도</u>(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u>과세연도</u>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u>과세연도</u>)와 그 다음 <u>과세연도</u>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u>과세연도</u>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u>과세연도</u>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p>	<p>제85조의6(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감면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u></p>

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신 설>

1.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
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
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
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
연도: 100분의 100

<신 설>

2. 제1호의 기간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100분의 50

<신 설>

3. 제2호의 기간 다음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100분의 30

<신 설>

4. 제3호의 기간 이후에 해당하는
과세연도: 100분의 20

③ ~ ⑧ (생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5조의11(장애인 표준사업장 생
산품 구매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인
증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같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고
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실질적

으로 지배하고 있는 장애인 표준
사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제외한다)
의 생산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지출
하는 경우 그 비용의 100분의 25
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
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
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
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세액공제를 신청하여야 한다.